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야 할 제도와 법규

- 지방자치 · 지방행정 · 제도개선 관련 법령 별첨 -

1. 제 · 개정 법률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생산적이고 경쟁력있는 정부 구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 환경에 적합한 정부 조직의 운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중 사업적 · 집행적 성질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 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그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직 · 인사 · 예산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가. 책임운영기관은 주된 사무가 사업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 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또는 재정 수입을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획예산위원회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도록 함(법 제4조).

나.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년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 운영기관의 재정의 경제성 제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 경영 합리



최병학

충남별전연구원
자치행정부

화 등에 관한 사업 목표를 기관장에게 부여하고, 기관장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 12조 제 1항 및 제 2항)

라. 책임운영기관의 사업 성과의 평가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를 두고, 동 심의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 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법 제 13조 및 제 14조)

마. 책임 운영에 필요한 자율적 인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 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책임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제 19조 및 제 26조)

바. 책임 운영기관에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특별 회계를 두도록 함(법 제 28조)

사. 예산 운영에 대한 강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책임 운영 기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월을 넓게 허용함.(법 제 37조 및 제 38조)

가.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을 넘

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6장(제27조 내지 제 39조) 및 부칙 제 2조 내지 제 4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①)

나. 다른 법률의 개정 : 자동차 교통관리개발 특별회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교통경찰 장비의 보강 등”을 “교통 경찰장비의 보강 등”으로 한다.

제 3조 제 1호를 삭제하고, 동 조 제 2호 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한다.

제 4조 제 1호를 삭제한다.

제 5조의 제목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으로 하고, 동조 중 “일반회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한다.(부칙 ②)

다.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특별회계(이하 “종전의 특별회계”라 한다)의 1999년도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종전의 특별회계의 1999년도 결산상의 잉여금은 2000년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해당 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부칙 ③)

라. 재산 등의 승계 : 종전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물품 및 채권·채무는 책임운영기관의 특별회계의 해당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부칙 ④)

<법률 제 5,711호, 1999. 1. 29>

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인 결정과 책임하에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일체의 사무를 가능한 한 동시에 이양하도록 하며, 주민의 복리 및 생활편의와 직접 관련된 사무는 시·도·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함.(법 제 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사무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11조에 규정된 국가사무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함.(법 제 4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한의 지방이양과 함께 이양된 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하고,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대하여는 중앙 행정기관간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지원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법 제 5조 제 1항 및 제 2항)

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이양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에 지방 이양대상 사무의 조사 및 이양결정권 등을 부여함.(법 제 6조 및 제 7조)

마. 지방이양 등의 대상사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이양된 사무의 경우에도 지방 자치 단체보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처리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행정단체의 장이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에 환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 18조)

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이양의 대상으로 통보받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법령의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법 제 19조)

* 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1999.7.30)

가.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①)

나. 경과조치 : 이 법 시행당시 행정자치부와 관계 중앙행정 기관간에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하

기로 합의한 사항은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②)

〈법률 제 5,710호 1999. 1. 29〉

3)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장관이 갖고 있던 각종 승인권·인가권 등을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이양함과 아울러 그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의 의무적 적용대상사업을 상·하수도, 도로, 주택 등 공공성이 강한 9개 사업으로 한정하고, 종전의 가스, 청소·위생, 시장 및 관광 사업 등을 제외함.(법 제 2조 제 1항)

나. 지방 직영기업의 재무관리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 확보기준을 삭제함.(법 제 31조)

다. 지방 직영기업 관리자가 지정된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여유금을 예탁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여유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법 제 33조 제 2항)

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현금 출납사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의 지정을 승인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법 제 33조 제 3항)

마. 지방 직영기업의 재정적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손 보전 후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함.(법 제 37조 제 1항)

바. 지방 직영기업이 경영환경 변화 등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은 이를 예산으로 일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그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 40조 제 1항 및 제 2항)

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이양함.(법 제 49조 제 3항 등)

아. 지방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실 지방 공기업에 대하여는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 공기업의 임원해임·조직 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 78조의 2)

가. 시행일 :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부칙 ①)

나.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 공사 및 지방 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부칙 ②)

〈법률 제 5,708호, 1999. 1.29〉

4) 정보화 촉진기본법 중 개정법률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입하는 정보화 책임관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도 정보화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정보화 추진기금의 용도에 복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정보화 정책의 기초자료인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정보화 지표의 조사·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 4조)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 책임관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 9조의 2)

다. 대규모 정부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정보 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 서비스의 연계 이용 등을 위한 정보화 계획을 반영하도록 함.(법 제 9조의 3)

라. 한국전산원의 설립근거법을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추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 정보 문화센터를 이 법에 의한 한국전산원의 부설기관으로 개편하며, 전기 통신기본법에 의한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 연구관리단을 이 법에 의한 정보 통신 연구진흥원으로 신설함.(법 제 10조·제 35조의 2 및 부칙 제 2조 내지 제 6조)

마. 교육 등 공공분야 정보화 추진시 민간투자를 적극 인정하고 관련 민간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법 제 11조)

바.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조기 구축을 위하여 기간통신 사업자 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유선방송 사업자도 도로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송선로시설 및 유선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한 관로 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 할 수 있도

록 함.(법 제 32조)

사. 정보화 추진기금의 용도에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법 제 34조)

가. 시행일 :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 10조, 제 35조의 2 및 부칙 제 2조 내지 제 6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①)

나. 한국전산원의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 부칙 제 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추진에 관한 법률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전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②)

다. 한국정보문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 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추진에 관한 법률 제 19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한국 정보문화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정 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 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 1조 단서의 개정 규정의 시행당시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전산원이 승계한다.

③ 부칙 제 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정보센터의 명의는 전산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 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부칙 제 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정보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 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전산원이 행하거나 전산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부칙 제 1조 단서의 개정 규정의 시행당시 정보 센터의 직원은 전산원의 직원으로 본다.(부 칙 ③)

라. 연구 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부칙 제 1조 단서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 하여 연구 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연구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 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연구 진흥원의 원장은 정보 통신부 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정보 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진흥원의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진흥원의 설립 등기를 한 후에는 지체없이 연구 진흥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④)

마. 한국전자통신 연구원의 권리·의무 승계 등

① 전기통신 기본법 제 15조의 2의 규정에 의

한 한국전자 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원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연구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연구 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부칙 제 1조 단서의 개정 규정의 시행당시 연구원에서 정보통신 연구개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연구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부칙 ⑤)

바. 다른 법률의 개정 :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⑥)

제 13조 및 제 19조의 2를 각각 삭제한다.

5)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중 개정법률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1998 회계연도까지 시·도세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수출하도록 하고 1999 회계연도 이후의 비율은 다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00 회계연도까지는 동 비율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2001 회계연도 이후의 비율은 세제개편의 결과에 따라 다시 조정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5,651호 1999. 1.21〉

2. 대법원 판례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야) 상고 기각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61조 제 1항 제 2호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후보자 당해 지역구 안에 1개소의 선거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되되, 다만 하나의 지역구가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1개소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라 함은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일체의 장소적 서비스를 말하고 어느 장소적 서비스가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그 곳에서 처리되는 사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중요판결(1999. 3. 12) 요지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 상고 기각

사인(私人)이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 능력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 311조, 제 312조의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녹음디스크에 복사한 경우에도 동일하다)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 313조 제 1항에 따라 공판 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시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것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 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중요판결(1999. 3. 9) 요지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카) 상고 기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7조 제 2항과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제 85조 제 2항의 관계

형별법규가 일반법·특별법 혹은 신법·구법의 관계에 있어 어느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

제하고 우선 적용되기 위해서는 양 법규의 내용이 동일하여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인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85조 제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인데 비하여, 수산업 협동조합법 제 7조 제 2항에서 금지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수산업 협동조합이라는 기관 자체를 선거운동에 이용함으로써 수산업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85조 제 2항의 금지대상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므로, 상호간에 일반법·특별법의 관계나 신법·구법의 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중요판결(1999. 2. 26) 요지

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마) 일부 파기환송

취득세 종과와 등록세 종과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제 112조 제 2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종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반면, 지방세법 제 138조 제 1항 제 3호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종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부동산 취득 등을 억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와 등록세 중과는 그 취지 를 달리하는 면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세 중과처분이 이중과세로서 현법상의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및 재산권 보장의 원 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중요판결(1999. 2. 24) 요지

5)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카) 상고기각

지방자치법이 1949. 7. 4 법률 제 32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동·리의 법적 성격

지방자치법이 1949. 7. 4 법률 제 32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동·리 자체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고 동·리의 소유 재산이 바로 그 주민의 공유 혹은 총유 재산이 되었던 것은 아니나, 동·리의 주민들이 특별히 주민의 공동 편익과 공동 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하여 온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민 공동체가 그 재산의 소유주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중요판결(1999. 1. 29) 요지

6)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 4 제 2항 제 3호 소

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 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 건설업의 허가를 받아 그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주택 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은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할 때의 인·허가가 아니어서 그 승인의 내용만에 의하여 고유 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중요판결(1999. 1. 15) 요지

3. 국회계류 지방자치법 개정안

1) 지방자치법 개정안(정부안, 1998. 11.)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 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제소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

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3조의 3)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에는 퇴직사유에 해당됨을 명문으로 규정함.(안 제 90조 및 제 90조의 2)

다. 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131조)

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를 설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54조의 2)

2)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김범명 의원 외)

국가 안보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군사시설이 위치한 지역 등 국가 안보상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가운데 도의 출장소로서 이미 시로서의 행정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과 주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시설 및 기능을 보호·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지역을 특정하여 시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7조의 시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독 사건뿐만 아니라 합의 사건도 소속직원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속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합의사건의 경우 국가와는 달리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밖에 없음.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인 바 국가의 경우에 비하여 균형이 맞지 않음.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도 법원의 허가를 얻을 경우

소속 직원이 단독사건뿐만 아니라 합의사건의 소송대리인도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 95조 제 5항)

4)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외, 96.11.9)

현행 지방자치법은 95년 4대 지방선거 이전에 손질된 것으로써, 지방자치 전면 실시 후의 혼란을 염려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무리없이 지방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발상을 버리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려는 노력이 절실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및 조직권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의 상시화와 지방의원의 활동비 현실화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이 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정 조항을 담아 이 개정 법률안을 제안한다.

가. 지방의회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활동강화를 위해 보수지급

과 실비 변상을 하되,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 32조 제 1항)

나.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에 대하여 각각 1인의 보좌관을 두되, 5급 상당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며, 당해 지방의회의원이 추천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장이 임용하도록 함.(안 제 32조 제 3항)

다.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5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0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 36조 제 1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37조 제 2항)

마.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시·도에 있어서는 매년 11월 10일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1월 15일에 집회하도록 함.(안 제 38조)

바. 정기회의 회기를 시·도의회의 경우 50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경우 45일 이내로 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 41조 제 2항 및 제 3항)

사. 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용 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설치된 지방의회 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의회 직원 인사위원회는 지방의회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지방 공무원법 제 8조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관

장하도록 함.(안 제 83조 제 2항, 제 3항 및 제 4항)

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 102조)

자.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 103조 제 1항)

차.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기구·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04조 제 1항)

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05조)

타.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06조)

파.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07조)

하.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그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 111조)

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 115조)

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 118조 제 1항)

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57조) **열린충남**